

# 건축심의와 건축사 업무

安 瑛 培

국가에서의 면허시험을 거쳐 당당한 건축사의 자격을 얻은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설계도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자주 논의되는 문제이다. 지금은 서울시의 건축심의 위원이 된 筆者도 한때는 심위를 받아야 했던 건축사의 위치에 있었던만큼 양쪽의 立場을 다른 사람들 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다.

건축심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건축사에게 납득이 갈 경우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납득이 안갈 때는 그 건축사는 참으로 불쾌한 일이 아닐수 없다.

건축가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견해는 얼마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의 견해가 때로는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많다.

건축심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당했다고 하는 건축사들의 不平을 나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럴때마다 건축심위의 필요성을 의심한 적도 하두번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건축심의의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都市속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그 건물하나만 볼 때는 좋은 건물이라도 그 주변의 都市환경을 고려할 때는 부적당하고 조화가 잘안되는 건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건축사는 지으려는 한건물이 차지하는 그 都市에서의 그 위치와 주변 환경과를 고려해서 그건물이 지녀야 할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건물의 形態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장의 事業利益을 앞세워 무리하게 강요하는 建築主의 무리하한 要求에 順應해서 法이 허용하는 最大限의 脫出口를 찾아 설계해야만 하는 건축사의 立場에서 보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都市의 建物들은 위선을 建築主들의 要求에 의하여 지어지긴 하지만 일단 지어지면 많은 市民들이 이것을 利用하게 된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주변환경에 조화되는 훌륭한 建物이 되도록 誘導하고 곤란한 입장에 스게되는 건축가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큰 구실을 하도록 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얼마안되는 기간이지만 건축심의위원의 한사람이 되고 나서 나는 이런 경우를 벌써 여러번 겪었다. 그럴때마다 참으로 건축심의위원의 사명이 과연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했다.

이런 예가 가장 심한 경우가 아파트 단지 계획이다. 한정된 대지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대의 住戶를 넣을수 있는나하는 것이 보다 나은 住居환경을 造成하는 일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入住하게 될 아파트 설계가 저렴한 설계비 탓인지 너무나 소홀히 이루어진 예가 많았다. 심지어는 아파트건설을 크게하는 모회사에서는 한 곳에 활용된 적이 있는 좋지않은 평면과 입면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일렬로 계속 배치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또다른 단지에서도 같은모양의 아파트를 되풀이해서 짓는다는 것은 再考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마치 한 타일의 자동차를 생산하듯 아파트 자체가 量産住宅宅으로 똑같은 틀 속에 生活를 強要당하는 것같이 여겨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풀어주느냐가 설계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건축심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또하나의 이유는 심의되는 설계수준이 의외로 낮은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규모도 크고 위치도 중요한 건물설계가 너무도 소홀히 되었거나 수준이 낮은 것을 보면 같은 건축가로써 울분을 느끼게 되곤 한다. 수준이 낮은 설계는 과감하게 다루어 좀더 우수한 건축가들이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건축심의의 필요성은 대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누가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과 효과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심의기준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묵인 되던 것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하는 위원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여러 위원들이 논의하다 보면 타당한 쪽으로 낙착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끝까지 엇갈리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설계 수준이 어느정도에 이르기만 하면 건축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은 과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도 수준이 낮은 경우는 재심회수가 많아져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상세하게 보완 내용을 지적해주다보면 심의위원인지 자문위원인지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심의하는 주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을 열거해보기로 한다.

1. 주변 건물 및 환경과의 調和
2. Site의 적절한 括用 與否.

3. 건축기술적인 面에서 크게 未備된 점 補完
4.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건물의 형태와 색채, 조정 및 造景 계획.
5. 住居團地의 경우 아름다운 住居環境造成과 車動線 조정.

이밖에도 여러 점을 들 수 있겠으나, 모두 이 범주안에 속한다고 본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위는 건축사들의 설계도를 심의한다라기 보다, 같은 동료로써 건축사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여 도시민들의 쓰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속의 建物を 설계할 수 있도록 協助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겠고 審議委는 또한 그런 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産業大學 教授

46 P에서

〈그림 2〉

